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2
----------	-----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파주시장

☐ 재안이유

영농지원 및 재해대책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농업인 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기계류의 사용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에 의해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안제6조).
- 나. 기계류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경과시 연체료 부과제도를 모두 폐지(안제7조).
- 다. 천제지변에 대비한 우선 대여 기준 신설(안제9조).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촌지도사업용”을 “농업기술보급사업용”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제5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6호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제2조에서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

②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소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계류 대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대여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천제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히 대여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제1항중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를 삭제한다.

제11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 (안)
제2조(종류) (생략)	제2조(종류) (현행과 같음)
1.동력경운기(<u>농촌지도사업용</u>)	1.-----(<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3.동력살분기및분무기(<u>농촌지도사업용</u>)	3.-----(<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4.토운차(<u>농촌지도사업용</u>)	4.---(<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5.천공기(<u>농촌지도사업용</u>)	5.---(<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6.농업용트랙타(<u>농촌지도사업용</u>)	6.-----(<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8.고성능분무기(<u>농촌지도사업용</u>)	8.-----(<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9.콤바인(<u>농촌지도사업용</u>)	9.---(<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10.이앙기(<u>농촌지도사업용</u>)	10.---(<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11.바인다(<u>농촌지도사업용</u>)	11.---(<u>농업기술보급사업용</u>)
제3조(위임관리) ②제1항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관리)②----- ----- -----제4호서식----- -----
③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④농업용트랙타 작업중 관리담당자 또는 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④----- -----제5호서식의----- -----

현행	개정 (안)
제4조(사용구역) 이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이 조례에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는 그 소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용허가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구분에 표기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삭제> 제6조(사용신청) ①이 조례에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 ②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현행	개정 (안)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후 사용 계약기간 1일초과시 1일 사용료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추가 징수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 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히 감면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제9조(기계류 대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대여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히 대여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현행	개정 (안)				
제10조(기계반환) ①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기계반환) ①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트랙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삭제)				
제12조(기술자 고용) ① (생략) ②트랙타의 경우에는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는 시장이 지급한다.	제12조(기술자 고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1) 기계류사용료액표 (별지 제1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신청서	<삭제> (별지 제1호서식)기계류사용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신청서	기계류사용 신청서				
<table border="1"> <tr> <td>읍·면·동·장</td><td></td></tr> <tr> <td>경 유 인</td><td></td></tr> </table>	읍·면·동·장		경 유 인		
읍·면·동·장					
경 유 인					
1.기계의 종류	1.기계의 종류				
2.수 량	2.수 량				
3.사 용 일 수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일간)	3.사 용 일 수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일간)				
4.용 도	4.용 도				
5.사 용 구 역	5.사 용 구 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u>허가하여</u>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u>대여하여</u>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파 주 시 장 귀하				

현행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기계류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계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계류사용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보관전환증	(별지 제4호서식) 보관전환증
(별지 제6호서식) 작업일지	(별지 제5호서식) 작업일지